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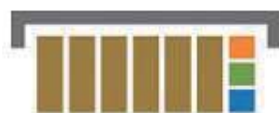
권채리



지역법제 연구 16-16-④-2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Floating
Buildings in France**

연구자 : 권채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won, Cherry

2016. 11.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의식주의 요소로서 인간의 주거는 인간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발전되어 오며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함. 최근 해상을 비롯한 수상공간은 새로운 주거 및 레저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시작.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 위에 짓는 부유식 건축물인 플로팅 건축물이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플로팅 건축발전의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의 부유식 건축물은 관련법의 부재로 말미암아 법적지위가 불분명하였음.
- 즉 동력을 갖고 있는 선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흠결로 말미암아 허가권자가 계류 및 고정방식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건축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해왔음.
- 「연안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을 통해 해양건축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와 선박으로 등기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음.

- 2016년 1월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이 신설됨.
 - 이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은 부유식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허가 제도 등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법적쟁점이 남아있음.

□ 연구의 목적

- 프랑스는 1989년에 세계적인 해양건축가 자끄 루즈리(Jacques Rougerie)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공섬을 마르세이유에 건설하는 등 현재 약 3,000개 이상의 부유식 시설물이 존재함.
-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 관련 관리체계 및 사례, 법제를 분석함을 통해 국내의 관련 제도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프랑스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 플로팅 건축의 범위
 - 부유식 시설물(établissement flottant) : 운송법전(code des transports)에서 부유식 시설물을 ‘통상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함.
 - 플로팅 하우스(maison flottante) : 프랑스에는 플로팅 하우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하우스보트(bateaux-logements)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과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의 부속서IV에서 하우스보트에 관하여 규정함.

○ 플로팅 건축물의 관리체계

- 다중이용시설(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ERP)로서의 플로팅 건축물 : 건축주거법전 명령편 제123-2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로이 출입하거나 대가지불 내지는 비용분담을 통해 사람들이 수용되거나, 또는 유료·무료로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초대된 자들 대상으로 모임이 열리는 건물, 부지, 구역 등 다중을 수용하는 일체의 시설’로 규정함. 부유식 시설물(EF)은 특수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함.
- 사적용도로서의 플로팅 건축물 : 거주용 선박, 선상가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하우스보트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거나 항해용일 때는 유람선(bateau de plaisance)으로 분류되는 반면, 동력이 없거나 비항해용일 경우,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로 간주됨.

□ 프랑스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 : 본 아레떼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은 정원이 12명이 초과하는 시설물을 가리킴. 이러한 시설물은 ‘EF형 시설물’(établissement du type EF)로 분류되며 건축주거법전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및 공포의 위험에 대

한 안전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주목할 점은 부유식시설의 약자인 ‘ef’를 조항 앞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임. 즉, 적용범위 및 안전규칙, 건축과 내부정비에 관련한 기술규칙, 구조방법, 이용자 수칙에 관하여 18개 별도의 조항(art. ef1 ~ art. ef18)을 두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2007년 11월 30일자 도시계획, 주거, 건축일반국 각 부 공동훈령 : 건축 시 집단주거건축물과 개인가옥, 그리고 건축 또는 설립 시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에 관한 2006년도 8월 1일자 두 개의 아레떼와 2007년 9월 11일자 데크레에 의해 개정된 2006년도 5월 17일 적용 데크레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평등, 시민권 및 참여에 관한 2005년 2월 11일자 법률’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본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에 개방된 시설의 장애인 접근가능성에 관한 1994년 7월 7일자 훈령은 폐지되었음.

○ 그 밖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규정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중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 : 본 데크레는 본래 상선, 여객선, 부유식 기구 및 부유식 시설물에 적용되는 사항 및 유람선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나 2013년 3월 25일자 데크레에 따라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는 폐지되고 기존의 조항은 모두 운송법전 명령편으로 편입됨.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 : 선박의 건조(建造) 시 사전신고에 관하여 제9조에서는 24미터 이상의 화물선·여객선·유람선, 부유식 기구,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24미터 이상의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을 가동함에 있어 사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 : 2007년 8월 2일자 개정 데크레와 2007년 12월 21일 개정 아레떼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하천에서 운항하는 대형선박과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 발급절차가 새로이 개시되었고 아울러 2008년 12월 30일자 개정 아레떼에 따라 하천에서 운항하는 대형선박에 관한 새로운 기술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들 규정의 명확한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본 훈령의 제정목적이 있음.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의 적용사항으로 항해자격, 항해자격의 연장, 감독기관,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에 관하여는 감독기관의 식별정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 리스트, 비정형적 건축, 유효기간 등을,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자 아레떼의 적용을 위하여 기술방침, 한시적 조항 등을 담고 있음.
- 화물선, 여객선 및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부유식 기구에 적용되는 안전의 기술적 규정에 관한 2013년 9월 24일자 아레떼 :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상선, 여객선, 부유식 기구에 적용가능한 안전기술방침에 관한 개정 2008년 12월 30일자 부속서7 ‘기술적 특례 유럽공동체 증서 발급을 위한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존재하는 여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특례사항’의 제6bis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플로팅 건축물 관련 분쟁사례 및 개선방향

○ 플로팅 하우스 건축허가에 관한 판례

- Quimper에 거주하는 다니엘 쥐팡(Daniel Juppin)은 Nantes 지류 (canal) 가까이에 위치한 Saint-Thois의 수역(plan d'eau)에 목조 부유식 가옥을 짓고자 자동 정수(淨水)처리 시설이 있는 3,000m²의 연못(étang)을 매입함.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의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얻어 플랫폼까지 설치하였으나, 진행 예정이었던 가옥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없는 건축’으로 간주하고 도시계획법전에 따라 시(市)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지됨.
- 쥐팡은 Rennes 행정법원에 Saint-Thois 시장의 공사중지처분 취소와 행정재판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제L761-1조에 근거하여 3,000유로 손해배상 청구함.
- 이에 Rennes 행정법원은 도시계획법전 제421-1조에 따라 건축물은 토대(fondations)조차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2009년의 공사는 도시계획법전 규정을 위반하였고, 도시계획법전 제480-2조에 따라 건축허가없이 이루어진 건축에 대하여 조례로 공사중지명령을 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쥐팡의 청구를 기각함.

○ 개선방향

- 별도의 법률제정 또는 도시계획법전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통해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확보함이 필요함.
- 이때 수면, 하상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공물법전 규율에 부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권을 공시함에 있어 등기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등록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프랑스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향후 관련 입법수립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개선에 방향제시

▶ 주제어 : 플로팅 건축물, 수상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프랑스 운송법전, 세빛둥둥섬

Abstract

I . L'objet de la Recherche

- Les motifs de la Recherche
 - Les constructions flottantes signifient tous les constructions flottantes sur le surface de l'eau sans se fonder sur le sol
- L'objet de la Recherche
 - Cette étude vise à analyser la législation française relative à la construction flottante en s'attendant qu'elle permettra de se référer au système et à la législation concernés en Corée.

II . Le contenu principal

- L'étendue des constructions flottantes
 - L'étendue des constructions flottantes
 - Etablissement flottant : En terme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constituent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tous bâtiments, locaux et enceintes dans lesquels des personnes sont admises, soit librement, soit moyennant une rétribution ou une participation quelconque, ou dans lesquels sont tenues des réunions ouvertes à tout venant ou sur invitation, payantes ou non.

- Maison flottante : Ce type de l'établissement flottant ne s'emploie pas fréquemment en France.
- Bateaux-logement : Dans l'attente de mesures spécifiques aux établissements flottants, les établissements flottants à usage privé de moins de 20 mètres sont soumis aux mêmes procédures et aux mêmes prescriptions techniques que les bateaux de plaisance de moins de 20 mètres. Cependa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36 du décret du 2 août 2007, des visites à sec tous les dix ans sont obligatoires.

○ La gestion des constructions flottantes

- L'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ERP) : En terme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il occupe une place de première importance en nombre dans les construction flottantes française.
- Constructions flottantes à usage privé

□ Les législations relatives aux constructions flottantes

○ Construction flottant en tant que ERP

- Arrêté du 9 janvier 1990 relatif aux mesures de sécurité applicables dans les établissements flottants ou bateaux stationnaires et les bateaux en stationnement sur les eaux intérieures recevant du public : Notamment il faut souligner que cet arrêté comporte le règlement de sécurité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dans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à propos de l'établissement du type EF

- 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n° 2007-53 DGUHC du 3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et des bâtiments d'habitation
- Les dispositifs autre que ceux-ci relatifs à l'ERP
 - Décret n°2007-1168 du 2 août 2007 relatif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 La plupart de dispositions de ce décret s'intègrent dans le code des transports en 2013.
 - Arrêté du 21 décembre 2007 relatif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 Circulaire du 3 août 2010 relative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 Arrêté du 24 septembre 2013 relatif aux prescriptions techniques de sécurité applicables aux bateaux de marchandises, aux bateaux à passagers et aux engin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III. L'intérêt de l'Etude

- L'intérêt que peut présenter cette étude consiste à fournir, aux acteurs coréens en question, des éléments de réflexions qui leur

permettront d'élaborer et de mettre en place un meilleur système de construction flottante, à la lumière du cas français.

➤ **Mots-Clés** : constructions flottantes, Etablissement flottant, code des transports, ERP, Etablissement de type EF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11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 2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23
제 1 절 플로팅 건축의 개요와 현황	23
제 2 절 플로팅 건축물의 범위	24
1. 부유식 시설물	24
2. 플로팅 하우스(maison flottante)	33
3. 하우스보트(bateaux-logements)	33
제 3 절 플로팅 건축의 관리체계	34
1.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	34
2. 사적용도의 플로팅 건축물	47
제 3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49
제 1 절 다중이용시설 플로팅 건축물 규정	49
1.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 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	49

2.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2007년 11월 30일자 도시계획, 주거, 건축일반국 각부(部)공동훈령	55
제 2 절 그 밖의 플로팅 건축 관련 규정	56
1.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테크레	56
2.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	57
3.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	58
4. 화물선, 여객선 및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부유식 기구에 적용되는 안전기술방침에 관한 2013년 9월 24일자 아레떼	61
제 4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분쟁사례 및 개선방향...	63
제 1 절 플로팅 건축허가 관련 분쟁사례	63
1. 사실관계	63
2. 판결요지	69
3. 소 결	71
제 2 절 플로팅 건축법제의 개선방향	71
제 5 장 결 론	75
참 고 문 헌	7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플로팅 건축물이란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 위에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세빛둥둥섬, 건축물로 등재된 최초의 플로팅 건축물인 서울 마리나센터, 제주도 성산포 앞바다의 제주마린리조트 등이 플로팅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상에서의 레저 및 주거 문화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스토랑, 호텔 등 수상공간에 플로팅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해상은 풍력, 조력, 파력 해수온도차 등 대체에너지 적용할 무한의 장소이다. 즉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플로팅 건축물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건축 패러다임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플로팅 건축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가옥 형태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 및 건축기술의 발달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동력을 갖고 있는 선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흠결로 말미암아, 허가권자가 계류 및 고정방식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건축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세빛둥둥섬, 서울 마리나센터에 대해 전자는 선박법을, 후자는 건축법을 적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말해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1999년 4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완화를 신설하여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완화규정이 있지만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플로팅 건축물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무적인 점은 올해 2016년 1월에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이 건축법 제6조의3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¹⁾ 이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은 부유식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선박의 정의에서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선박에 포함하고 있어 플로팅 건축물은 선박으로의 법적지위가 인정된다.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북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플로팅 건축물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논의를 점검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1)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9.]

프랑스는 1989년에 세계적인 해양건축가 자끄 루즈리(Jacques Rougerie)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공섬을 마르세이유에 건설하는 등 여러 해 전부터 플로팅 건축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약 3,000개 이상의 플로팅 건축물이 존재한다. 특히 프랑스에는 다수의 선상 레스토랑이 존재하는데, 이는 부유식 시설물인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인 까닭에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 관련 관리체계 및 사례, 법제를 분석함을 통해 국내의 관련 제도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며 플로팅 건축물이 잘 발달되어 있는 네덜란드를 위시한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6개국의 플로팅 건축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프랑스는 나머지 5개국 보고서의 목차구성과 일부 편제를 달리 하였다. 즉 일본,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제2장에서 각 국가의 건축법제 일반을 개관하고, 이어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를 살피고, 제4장에서 플로팅 건축법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목차구성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이 부동산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운송법전의 하천편에서 부유식 시설물을 ‘통상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수상 레스토랑과 같은 부유식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주거법전에 근거하여 제정된 데크레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제 일반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프랑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는

연구내용에 있어 일본, 독일,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보고서와 비교하여 목차구성에 있어 차별을 두기로 한다.

< 공동연구진 >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소속)
1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일본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수홍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독일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네덜란드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미국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6	캐나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안정민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제2장은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것으로 크게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용도로 이원화되는 플로팅 건축 관리체계를 고찰한다. 프랑스에서 플로팅 건축물은 ‘établissement flottant’로 표기되는데 본문에서는 ‘부유식 시설물’ 또는 ‘부유식 건축물’ 혼용하여 표기하고, 맥락에 따라 ‘플로팅 건축물’로 표현함을 밝힌다. 즉, 프랑스의 경우 운송법전에 따른 이동성이 없는 부유식 시설물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사적용도로 이용되는 현실이어서 엄밀히 부유식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제목이 플로팅 건축물이고,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서는 건축주거법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란 용어도 혼재하여 표기하였다.

제3장은 플로팅 건축 관련 법령분석에 관한 것으로 크게 다중이용 시설 플로팅 건축물 규정과 그 밖의 관련규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2007년 11월 30일자 도시계획, 주거, 건축일반국 각부(部)공동훈령’이 그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관련 규정으로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중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중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중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 그리고 ‘화물선, 여객선 및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부유식 기구에 적용되는 안전의 기술적 규정에 관한 2013년 9월 24일자 아레떼’를 살펴본다.

제4장은 플로팅 건축허가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현재 프랑스에는 3,000개 이상의 주거용 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없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북서부 지방 브루타뉴(Bretagne)에서 개인이 플로팅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개인이 플로팅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입법의 부재로 말미암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법원과의 분쟁사례를 살펴본다. 아울러 프랑스 부유식 건축물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전술하였듯이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프랑스는 주거형태로서 ‘플로팅 하우스’가 발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향후 플로팅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인정될 때의 입법사항 및 제

기되는 쟁점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특히 최근에 건축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한 우리의 경우와 일면 유사한 동시에 역으로 프랑스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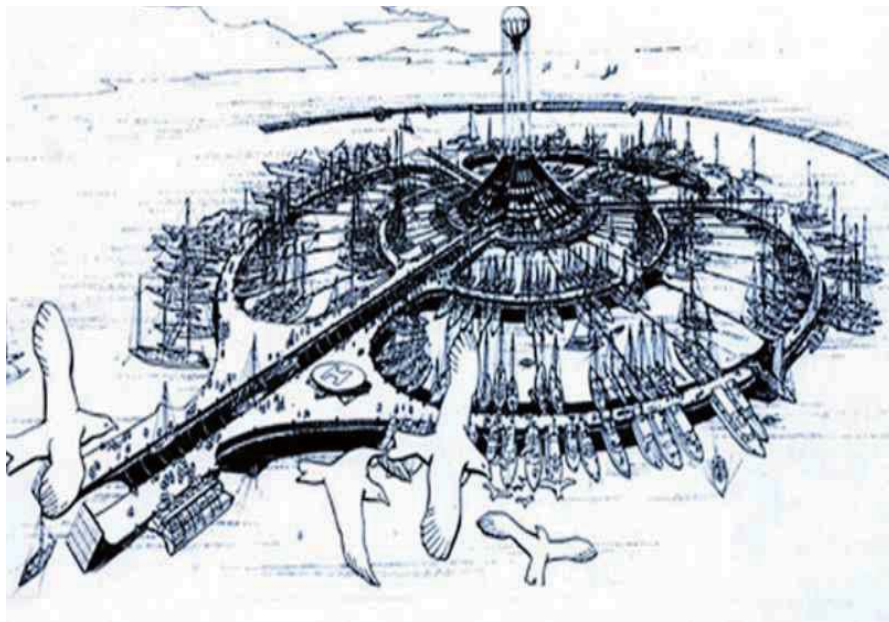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헌연구, 법령분석 및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의 플로팅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세 차례 개최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제 1 절 플로팅 건축의 개요와 현황

프랑스는 1989년에 세계적인 해양건축가 자끄 루즈리(Jacques Rougerie)²⁾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공섬을 마르세이유에 건설하는 등 현재 약 3,000개 이상의 플로팅 건축물이 존재한다.

[그림 1] 자끄 루즈리의 Exposition universelle 1989



출처 : <http://www.rougerie.com/indexd.php>

2) 자끄 루즈리(1945~)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해저 건축가로 1970년대부터 대서양 개발 프로젝트의 효시자이며 1970년대에 처음으로 해저건축개념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뿐 아니라 일본, 인도, 이집트, 미국 등에 수상·해저 건축물을 지었다. 현재 자끄 루즈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https://fr.wikipedia.org/wiki/Jacques_Rougerie_\(architecte\)](https://fr.wikipedia.org/wiki/Jacques_Rougerie_(architecte)) (2016.10.12.)

기존에는 선박을 개조한 레스토랑 형태가 눈에 많이 띄었으나 최근에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의 영향으로 캠핑용 플로팅 하우스, 친환경 플로팅 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주거용 플로팅 하우스는 거의 전무할 실정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즉 우리나라에 리조트 등의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설한 공공의 부유식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프랑스는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 용도로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플로팅 건축물의 범위

1. 부유식 시설물

(1) 운송법전 개관

프랑스는 2010년 육지, 해상, 영공의 물류/사람의 운송수단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는 법전화 작업을 단행함에 따라 하천과 바다에서 운행하는 선박에 관한 사항은 운송법전(code des transports)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은 운송법전(Code des transports) 및 내수면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부유식 시설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명령 등의 적용을 받는다.

운송법전 법률편 제4편은 하천에서의 운송에 관하여, 그리고 제5편은 바다에서의 운송에 대하여 각각 규율하고 있다.

먼저 운송법전 법률편 제4편 ‘국내운항과 하천운송’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하천선박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선박의 판별, 소유, 그리고 하천선박 간의 충돌 시 및 하천선박과 해상선박 간 충돌

시 책임문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2권은 운항자격, 하천선박 조종자격, 선박 - 동력장치 있는 선박과 동력장치 없는 선박 모두 포함 - 의 국내운항 순찰에 관하여, 이어 제3권에서 프랑스 항해로 및 하항을 규정한다. 제4권은 하천운송회사, 수공업 선박, 운송중개인, 화물 운송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운송, 제5권은 운송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조항이다.

운송법전 법률편

제4편: 국내 운항과 하천 운송 (제4000-1조 ~ 4000-3조)

제1권 (Livre 1er) : 하천선박(bateau)

제1절 (Titre 1er) : 선박의 판별(identification) (제4110-1조)

제1장 (Chapitre 1er) : 등록 (제4111-1조 ~ 제4111-8조)

제2장 : 톤수 측정(jaugeage) (제4112-1조 ~ 제4112-5조)

제3장 : 선박의 표시 (marques d'identification) (제4113-1조)

제2절 : 소유 (제4120-1조)

제1장 : 물권(droits réels) (제4121-1조 ~ 제4121-4조)

제2장 : 저당 및 특권 (제4122-1조 ~ 제4122-26조)

제3장 : 보전조치와 강제집행 (제4123-1조)

제4장 : 기타

제3절 : 책임 (제4130-1조)

제1장 : 하천선박 간의 충돌 (제4131-1조)

제2장 : 하천선박과 해상선박과의 충돌 (제4132-1조)

제4절 : 형벌 (제4140-1조)

제1장 : 위반의 확인 (제4141-1조)

제2장 : 하천선박의 판별과 관련한 위반 (제4142-1조 ~ 제4142-3조)

제3장 : 저당 관련한 위반 (제4143-1조)

제2권 : 국내 운항 (제4200-1조)

제1절 : 일반조항 (제4210-1조)

제1장 : 하천선박에 관한 조항 (제4211-1조)

제2장 : 조종사와 승무원에 관한 조항 (제4212-1조 ~ 제4212-3조)

제2절 : 운항자격 (제4220-1조 ~ 제4220-2조)
제3절 : 하천선박 조종 능력 자격증
제4절 : 국내 운항 순찰 (제4240-1조)
제1장 : 순찰규칙 (제4241-1조 ~ 제4241-3조)
제2장 : 동력장치 없는 선박의 운항 (제4242-1조 ~ 제4242-3조)
제3장 : 동력장치 있는 선박의 운항 (제4243-1조)
제4장 : 직권에 의한 인사이동 (제4244-1조 ~ 제4244-2조)
제5절 : 하천선박의 해상운항에 관한 조항 (제4251-1조)
제6절 : Rhin, Moselle 및 Lemane 운항에 관한 특별조항 (제4260-1조)
제7절 : 행정상 제재와 형사상 제재 (제4270-1조 ~ 제4274-1조)
제3권 : 프랑스 항해로 및 하항(河港)
제1절 : 프랑스의 항해로 (제4311-1조 ~ 제4316-1조)
제2절 : 하항(河港)
제4권 : 하천운송
제1절 : 일반조항
제2절 : 하천운송회사
제3절 : 수공업 선박
제4절 : 운송 중개인
제5절 : 화물운송계약
제6절 : 통제 및 형벌
제7절 : Rhin과 Moselle에서의 운송 특수조항
제5권 : 운송회사의 근로자

운송법전 법률편 제5편은 운송과 해상항해 편으로 해상에서 운행하는 선박에 관하여 일곱 개의 권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제1권은 해상선박 일반에 관한 것으로 선박의 지위 - 선박판별, 건조, 소유 포함 -, 책임과 보험, 충돌, 파손 등의 사고 시 회복, 선박의 유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2권은 운항에 관한 내용으로 통행권, 운항자격, 안전 및 오염예방, 구조 및 원조, 동력장치 있는 유람선의 조종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권은 해상항구, 제4권은 해상운송, 제5권은

선원, 제5권은 선박과 선원 등의 국제기록에 관한 장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권은 프랑스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이다.

유의할 점은 하천편과는 달리 동력장치 없는 선박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내운송과 하천운송에 관한 제4편에 비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송법전 법률편

제5편 : 운송과 해상 항해 (제5000-1조 ~ 제5000-6조)

제1권 : 해상선박(navire)

제1절 : 선박의 지위

제1장 : 선박의 판별 (제5111-1조 ~ 제5111-4조)

제2장 : 선적(船籍) 취득(francisation)과 등록 (제5112-1조 ~ 제5112-2조)

제2-2장 : 선박의 톤수 측정 (제5112-2조 ~ 제5112-3조)

제3장 : 선박의 건조 (제5113-1조 ~ 제5113-6조)

제4장 : 선박의 소유 (제5114-1조 ~ 제5114-50조)

제2절 : 책임과 보험 의무가입

제1장 :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

제2장 : 책임에 관한 특수조항

제3장 : 보험 의무가입

제3절 : 운항사고의 회복

제1장 : 충돌(abordage)

제2장 : 원조(assistance)

제3장 : 파손(avaries)

제4절 : 유기된 선박과 잔해

제1장 : 유기된 선박

제2장 : 잔해

제2권 : 해상 운항

제1절 : 영해에서 위험성 없는 통행권 (제5211-1조 ~ 제5211-5조)

제2절 : 선적서류

제3절 : 해상 운항 자격

제4절 : 안전 및 오염예방
제1장 : 안전 및 오염예방
제2장 : 항해 안전
제3장 : 위반의 확인
제5절 : 통제와 처벌
제6절 : 구조와 원조
제7절 : 동력장치 있는 해상 · 하천 유람선의 조종교육
제8절 : 수중조사
제3권 : 해상 항구
제4권 : 해상운송
제5권 : 선원 (les gens de mer)
제6권 : 선박과 선원 등의 국제기록에 관한 장부
제7권 : 프랑스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유의할 점은 운송법전에서 하천에서 운행하는 선박과 바다에서 운행하는 선박을 규율함에 있어 전자는 ‘bateau’로, 후자는 ‘navire’로 달리 표현한다는 점이다.

(2) 부유식 시설물 등

운송법전 법률편 제L4000-3조에서는 (항해 목적의) 선박, 부유식 기구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부유식 시설(établissement flottant)을 ‘통상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운송법전 법률편 제4000-3조³⁾

본 편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 선박(bateau) : 원칙적으로 국내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 ;
- 2° 부유식 기구(engin flottant) : 내수면(eaux intérieures) 상의 공사에 이용되는 시설물 관련 모든 부유식 건축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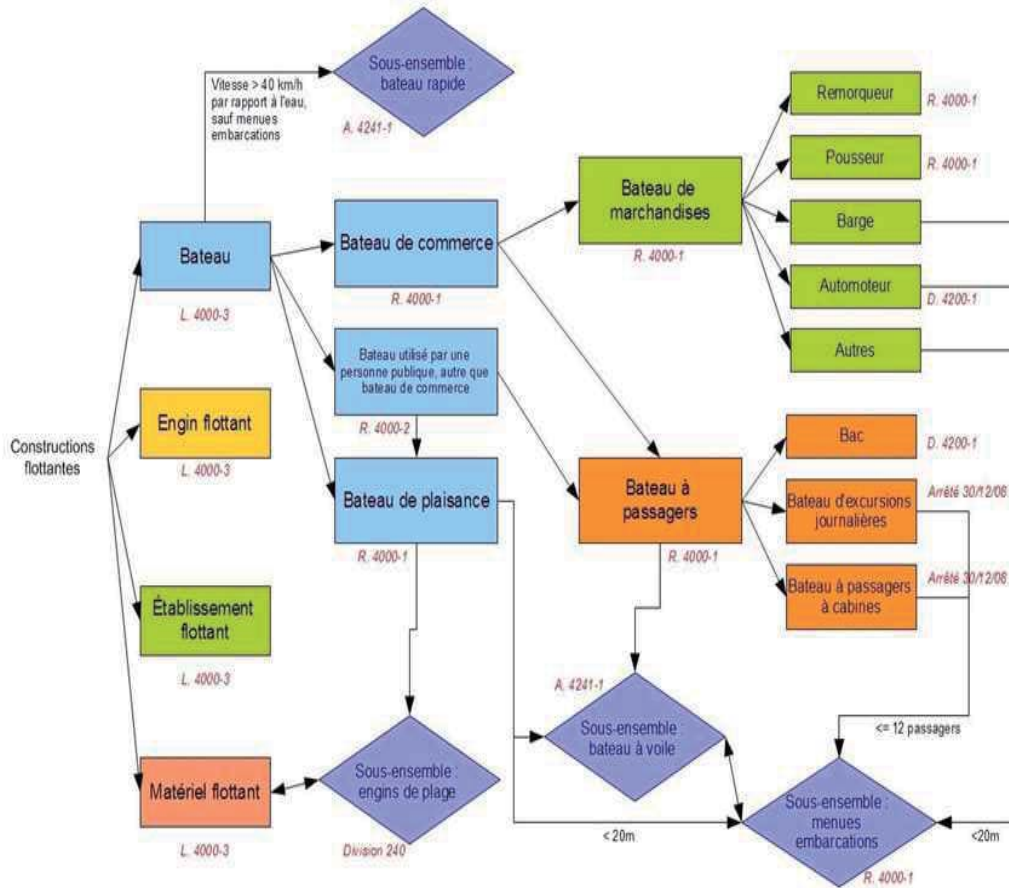
- 3° 부유식 시설물(établissement flottant) : 통상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 ;
- 4° 부유식 장비(matériel flottant) : 선박, 부유식 기구, 부유식 시설 외의 운항증이 있는 모든 부유식 건축물 또는 물체

하우스보트(bateau-logement)은 모터가 장착되어 있거나 항해용일 때는 유람선(bateau de plaisance)으로 분류된다. 반면 비동력이거나 항해용이 아닐 때에는 사적 용도의 부유식 건물(établissement flottant à usage privé)로 본다. 이를 통해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의 범위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내수면에서 정박하고 있는 부유식 시설물’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선착장(embarcadère)이나 수상 레스토랑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프랑스 운송법전에서는 부유식 시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부유식 기구(engin flottant)’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내수면(eaux intérieures) 상의 공사에 이용되는 시설물 관련 모든 부유식 건축물을 일컫는다. 이는 부유식 장비(matériel flottant)와 다시 구분되는데 부유식 장비는 선박, 부유식 기구, 부유식 시설 외의 것으로 항해할 자격이 있는 뗏목, 건축물, 조립품 등의 일체를 말한다.

-
- 3)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partie, sont respectivement dénommés :
 - 1° Bateau : toute construction flottante destinée principalement à la navigation intérieure ;
 - 2° Engin flottant : toute construction flottante portant des installations destinées aux travaux sur les eaux intérieures ;
 - 3° Etablissement flottant : toute construction flottante qui n'est pas normalement destinée à être déplacée ;
 - 4° Matériel flottant : toute construction ou objet flottant apte à naviguer, autre qu'un bateau, un engin flottant ou un établissement flottant.

[그림 2] 부유식 건축물 종류 및 관련 규정



출처: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Titres-de-navigation.html>

[그림2]는 부유식 건축물(constructions flottantes)의 종류와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부유식 건축물을 하천상의 선박(bateau), 부유식 기구(engin flottant), 부유식 시설물(établissement flottant), 부유식 장비(matériel flottant)로 구분하고 있다. 선박은 상업용 선박(bateau de commerce), 상업용 선박 외의 공법인(personne publique)이 사용하는 선박, 그리고 유람선(bateau de plaisance)로 나뉜다. 상선은 다시 화물선(bateau de marchandises)와 여객선(bateau à passagers)로 구분된다.

운송법전 제5000-2조에 따라 해상선박의 범위는 ‘해상에서 운행하는 상업용·어업용·오락용 부유식 기구물 및 공공서비스 목적의 부유식 기구물’이다.

운송법전 법률편 제5000-2조4)

- I. 반대규정이 없으면, (해상)선박은 본 법전의 적용대상인 선박은 다음과 같다 :
- 1° 상업용·어업용·오락용 항해 목적으로 제조되고 장착된 모든 부유식 기구물
 - 2° 행정적·산업적·상업적 성격의 공공서비스 목적의 항해를 위해 제조되고 설치된 모든 부유식 기구물.
- II. 반대규정이 없으면, 자국선박, 외국선박 여하를 불문하고 본 법전의 조항은 전쟁용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중이거나 가동 중인 자국 해군 및 외국 해군 내의 모든 선박(bâtiments)은 전쟁용 선박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프랑스 운송법전 상의 선박은 ‘하천에서 운행하는 부유식 건축물’ 및 ‘해상에서 운행하는 상업용·어업용·오락용 부유식 기구물 및 공공서비스 목적의 부유식 기구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플로팅 건축물은 “이동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항해목적”이 명시된 해상에서의 부유식 시설물은 해당되지

-
- 4) I. — Sauf dispositions contraires, sont dénommés navires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
- 1° Tout engin flottant, construit et équipé pour la navigation maritime de commerce, de pêche ou de plaisance et affecté à celle-ci ;
 - 2° Les engins flottants construits et équipés pour la navigation maritime, affectés à des services publics à caractère administratif ou industriel et commercial.
- II. — Sauf dispositions contrair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ne s'appliquent pas aux navires de guerre, qu'ils soient français ou étrangers. Sont considérés comme navires de guerre tous bâtiments en essais ou en service dans la Marine nationale ou une marine étrangère.

않으며, 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은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천에 지어진 부유식 시설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 및 관련 아레떼의 적용에 따른 부유식 시설물의 구체적 사항5)

기준	소기준	항해 자격	절차	감독 기관	2010 기술 방침	한시 적 조항	운항증 기한	의무 점검 기한
사적 용도 외의 부유식 시설물	12인 을 초과하는 부유식 시설물	부유식 시설물 자격증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 제36조 및 제2절, 제3·4장	전문가 또는SdC (300인이상 의 경우 SdC 의무사항)	예정된 아레떼 및 필요한 경우,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	-	10년	10년
	12인 이하의 부유식 시설물				예정된 아레떼			
사적 용도의 부유식 시설물	길이 24미터 이상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 제36조 및 제2절, 제 3·4장(단, 건설의 사전 · 사후 신고 부분 제외)	전문가 또는 SdC	예정된 아레떼			
	길이 20미터 이상-24 미터 미만				예정된 아레떼			
	길이 20미터 미만				예정된 아레떼			

5)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의 부속서V를 재구성 함.

2. 플로팅 하우스(maison flottante)

프랑스에는 플로팅 하우스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아마도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고 주택부족난을 겪고 있다거나 북유럽의 경우처럼 지형인 특수성이 수반되지 않기에 플로팅 주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서 플로팅 하우스가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거법전에서도 플로팅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이 매입한 연못에 사적용도로 플로팅 하우스를 짓고 자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의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얻어 플랫폼까지 설치하였으나, 진행 예정이었던 가옥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없는 건축’으로 간주하고 도시계획법전에 따라 시(市)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다. 이에 관한 행정법원의 판례를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하우스보트(bateaux-logements)

거주용 선박, 선상가옥 등으로 일컬어지는 하우스보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터가 장착되어 있거나 항해용일 때는 유람선(bateau de plaisance)으로 분류되는 반면 동력이 없거나 비항해용일 경우,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로 간주된다.

운항중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⁶⁾에서 하우스보트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술한 데크레의 세부 적용사항을 위하여 제정된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과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중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의 부속서IV(annexe IV)에

6) Décret n°2007-1168 du 2 août 2007 relatif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서는 데크레 제4조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하우스보트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비록 대부분의 상당시간 항해하지 않고 정박해 있을지언정, 여가, 스포츠, 교육 목적의 항해에 이용되는 유람선 중 사적용도로 인정된(entendu) 유람선.
- 부유식 시설물, 즉 그 용도(vocation)가 애초부터 항해용이 아니거나 또는 더 이상 항해용이 아닌 부유식 건축물 - 달리 말해 지체없이 이동하거나 이동되지 않거나, 더 이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유식 건축물.

그 용도가 애초부터 항해용이 아니거나 또는 더 이상 항해용이 아닌 하우스보트는 선박이 아니며, 운항증 발급규정 적용대상인 부유식 시설물로 간주된다. 동력장치를 제거하여 하우스보트로 변형된 ‘Freycinet’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제 3 절 플로팅 건축의 관리체계

1.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

(1) 다중이용시설 규정 개관

다중이용시설은 건축주거법전 법률편 제123-1조 및 제123-2조, 그리고 명령편 제123-1조 내지 제123-5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건축주거법전 명령편 제123-2조는 “다중이용시설(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ERP)이란 자유로이 출입하거나 대가지불 내지는 비용분담을 통해 사람들이 수용되거나, 또는 유료·무료로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초대된 자들 대상으로 모임이 열리는 건물, 부지, 구역 등 다중을 수용하는 일체의 시설을 일컫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회, 학교, 체육관 등 매우 광범위한 시설이 다중이용시설 개념에 포섭된다.

건축주거법전 명령편 제123-2조⁷⁾

다중이용시설이란 자유로이 출입하거나 대가지불 내지는 비용분담을 통해 사람들이 수용되거나, 또는 유료·무료로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초대된 자들 대상으로 모임이 열리는 건물, 부지, 구역 등 다중을 수용하는 일체의 시설을 일컫는다.

시설 안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자격으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 법전 법률편 제123-1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제작(création), 정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는 최고행정법원령이 정하는 안전규칙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주거법전 법률편 제123-1조⁸⁾

다중이용시설의 제작, 정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는 최고행정법원령이 정하는 안전규칙에 의한다.

제123-2조는 화재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주, 건설업자, 건물과 공중에 개방된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한 조치가 데크레 형식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히며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배려 또한 전술한 조치에 있어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7)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constituent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tous bâtiments, locaux et enceintes dans lesquels des personnes sont admises, soit librement, soit moyennant une rétribution ou une participation quelconque, ou dans lesquels sont tenues des réunions ouvertes à tout venant ou sur invitation, payantes ou non. (art. R123-2)

Sont considérées comme faisant partie du public toutes les personnes admises dans l'établissement à quelque titre que ce soit en plus du personnel.

8) Les travaux qui conduisent à la création, l'aménagement ou la modification d'un 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doivent être conformes aux règles de sécurité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 L123-1)

건축주거법전 법률편 제123-2조9)

화재로부터의 보전(sauvegarde) 및 안전(sécurité), 그리고 퇴거와 방어수단에 관한 보충적 조치는 데크레에 의해 소유주, 건설업자, 건물과 공중에 개방된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보충적 조치에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주거법전 명령편 제R123-3조 내지 제R123-17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유식 시설물의 안전규칙은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은 용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2] 용도(activit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유형

유 형	시 설
J	노약자 수용시설
L	다중 이용의 발표회, 컨퍼런스, 모임, 공연시설
M	상점, 백화점
N	레스토랑과 주점
O	호텔과 가족펜션
P	무도장 및 도박장
R	교육시설, 하계학교, 탁아소

9) Des mesures complémentaires de sauvegarde et de sécurité et des moyens d'évacuation et de défense contre l'incendie peuvent être imposés par décrets aux propriétaires, aux constructeurs et aux exploitants de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ouverts au public. Ces mesures complémentaires doivent tenir compte des besoins particuliers des personnes handicapées ou à mobilité réduite. (art. L123-2)

유 형	시 설
S	도서관, 정보 및 고문서 열람센터
T	상업용 전시관
U	보건시설
V	종교시설
W	행정청, 은행, 사무실
X	실내 운동시설
Y	박물관

또한 노천시설, 텐트, 이동식 구조물, 공기주입식 구조물, 고층에 위치하는 호텔-레스토랑, 산 속 대피소, 역 등은 특수시설로 간주되어 별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데, 부유식 건축물도 여기에 해당된다.

[표 3] 특수 다중이용시설 유형

유 형	시 설
PA	노천시설
CTS	극마단, 텐트, 이동구조물
SG	공기주입식 구조물
OA	고층 호텔-레스토랑
REF	산 속 대피소
GA	다중이 이용하는 역
EF	부유식 건축물(établissement flottant)

한편, 다중이용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 5단계의 등급으로 범주화된다. 1등급은 1500명 초과, 2등급은 700명 초과~1500명 이하, 3등급은 300명 초과~700명 이하, 4등급은 300명 이하(단, 5등급 시설제외), 5등

급은 각 용도에 따른 유형에서 규정으로 정해놓은 최소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한다.¹⁰⁾ 부유식 건축물은 5등급이 없다. 즉 다중이용시설 부유식 건축물은 용도에 따른 구분만 따른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각기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을 정의하고 있다. 범위가 중복되기는 하지만 입법목적 및 관할부처가 상이하다.¹¹⁾ 이외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다중이용 건축물’¹²⁾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¹³⁾, 건설산업기본

10)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2351> (2016.10.12.)

11) 김성배,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입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49호, 한국법제연구원, 2015, p.69.

1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3)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법 제41조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 한국과 프랑스의 다중이용시설 범위

	프랑스	한국	
근거 법	건축주거법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p>다중이용시설이란 자유로이 출입하거나 대가지불 내지는 비용분담을 통해 사람들이 수용되거나, 또는 유료·무료로 모두에게 개방되거나 초대된 자들 대상으로 모임이 열리는 건물, 부지, 구역 등 다중을 수용하는 일체의 시설을 일컫는다.</p> <p>시설 안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자격으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명령편 제123-2조)</p>	<p>“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1호)</p>	<p>“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제2조1항1호)</p>
유형	<p>○용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표2) : 노약자 수용시설 ; 다중이용의 발표회, 컨퍼런스 모임, 공연시설 ; 상점, 백화점 ; 레스토랑과 주점 ; 호텔과 가족펜션 ; 무도장 및 도박장 ; 교육시설,</p>	<p>제3조(적용대상) ①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p> <p>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p>	<p>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p>

제 2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프랑스	한국	
	<p>하계학교, 탁아소 ; 도서관, 정보 및 고문서 열람센터 ; 상업용 전시관 ; 보건시설 ; 종교시설 ; 행정청, 은행, 사무실; 실내 운동시설 ; 박물관 ○특수 다중이용시설 (표3) : 노천시설 ; 곡마단, 텐트, 이동구조물 ; 공기주입식 구조물 ; 고층 호텔-레스토랑 ; 산 속 대피소 ; 다중이 이용하는 역 ; 부유식 건축물</p>	<p>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p>	<p>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p>

	프랑스	한국	
		<p>대규모점포</p> <p>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p> <p>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p> <p>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p> <p>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p> <p>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p> <p>19. 실내주차장</p> <p>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p> <p>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p> <p>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p> <p>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p>	<p>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사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p> <p>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p> <p>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p> <p>(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p>

제 2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프랑스	한국	
	<p>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p> <p>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p> <p>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p> <p>(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p> <p>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p> <p>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p> <p>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p>

	프랑스	한국
		<p>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p> <p>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p> <p>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p> <p>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p>

제 2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프랑스	한국	
			<p>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p> <p>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p> <p>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p> <p>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p>

(2) 다중이용시설 플로팅 건축물(EFP/EF) 사례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플로팅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는 수상 레스토랑이다. 파리 센느 강변의 레스토랑 ‘Kiosque Flottant’을 비롯하여 적지

많은 수의 선상 레스토랑이 존재하며, 이 중에는 최대 수용인원이 250명인 회의장 겸 레스토랑도 있다.

[그림 3] LOT의 다중이용시설 플로팅 건축물 : 2층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는 레스토랑이다. 1990년도에 지어졌다.



[그림 4] Kiosque Flottant : 규격 30m x 7m의 레스토랑으로 파리에 위치하며 1999년에 지어졌다.



제 2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현황 및 관리체계

[그림 5] Le Talisman : 250명 수용가능한 회의장 겸 레스토랑이다.
2001년도에 제작되었다.



[그림 6] Cercle de la mer : 250명 수용가능하며 2003년도에 제작되었다.



2. 사적용도의 플로팅 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과 대조되는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유식 시설물의 허가는 하천에서의 운항증(titre de navigation fluviale) 관련 사항으로 데파르트망 산하의 국토해양국에서 관할한다. 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에서 부유식 시설물 허가증(certificat d'établissement flottant)을 발급하는데 이때의 절차는 상선(bateaux de commerce)의 운항증 발급 절차와 비슷하다. 그러나 부유식 시설물이 사적용도(à usage privé)일 경우에는 별도의 사적용도 부유식 시설물 허가증(certificat d'établissement flottant à usage privé) 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0년 8월 3일자 훈령¹⁴⁾은 2007년 8월 2일자 테크레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에 관한 테크레 제37조에 대하여 ‘부유식 시설물의 특별대책이 마련되는 동안 (dans l'attente de mesures spécifiques aux établissements flottants), 20미터 미만의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은 20미터 미만의 유람선(bateaux de plaisance)과 동일한 절차와 기술방침(prescriptions techniques)을 따른다. 그러나 2007년 8월 2일자 테크레 제36조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점검(visite)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2)

14) Circulaire du 3 août 2010 relative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제 3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 분석

제 1 절 다중이용시설 플로팅 건축물 규정

1.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 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¹⁵⁾

(1) 일 반

이는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하는 법제이나 프랑스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동하지 않는 선박’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로서의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bateaux stationnaires) 및 내수면에 정박한(en stationnement) 선박(이하 시설물(établissement)로 통칭)은 정원이 12명이 초과하는 시설물을 가리킨다(제 1조).¹⁶⁾ 이러한 시설물은 ‘EF형 시설물’(établissements du type EF)로 분류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및 공포의 위험에 대한 안전규정(règlement de sécurité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dans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을 본 아레떼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본래,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 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데크레(décret n° 90-43 du 9 janvier 1990 relatif aux mesures de sécurité

15) Arrêté du 9 janvier 1990 relatif aux mesures de sécurité applicables dans les établissements flottants ou bateaux stationnaires et les bateaux en stationnement sur les eaux intérieures recevant du public (ERP type EF)

16) 전술한대로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은 수용인원에 따른 등급에서 최소인원을 정하는 5등급이 없다.

applicables dans les établissements flottants ou bateaux stationnaires et les bateaux en stationnement sur les eaux intérieures recevant du public)가 존재하였으나, 운송법전의 명령편 중 하천에 관한 부분인 제4편을 제정하는 데크레(décret n° 2013-253 du 25 mars 2013 relatif aux dispositions de la quatrième partie réglementaire du code des transports (Décrets en Conseil d'Etat et décrets simples))에 의해 2013년 폐지되었다.

본 아레떼는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할 점은 별도의 형식으로 - 부유식시설의 약자인 ‘ef’를 조항 앞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용범위 및 안전규칙, 건축과 내부정비에 관련한 기술규칙, 구조방법, 이용자 수칙에 관하여 18개 조항(art. ef 1~art. ef 18)을 따로 두고 있다.

모든 시설물은 주거건축법전 명령편 제123-12조17)에서 정하는 화재 및 공포(panique)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안전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제3조).¹⁸⁾ 데파르트망의 안전위원회는 시설물이 제2항에 따른 안

17) Le ministre de l'intérieur précise dans un règlement de sécurité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centrale de sécurité prévue à l'article R. 123-29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s règles définies au présent chapitre. Il indique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il doit être procédé à l'essai des matériaux, à l'entretien et à la vérification des installations, à l'emploi et à la surveillance des personnes, à l'exécution des travaux. Le règlement de sécurité comprend des prescriptions générales communes à tous les établissements et d'autres particulières à chaque type d'établissement. Il précise les cas dans lesquels les obligations qu'il définit s'imposent à la fois aux constructeurs, propriétaires, installateurs et exploitants ou à certains de ceux-ci seulement. La modification du règlement de sécurité est décidée dans les formes définie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Le ministre détermine dans quelles limites et sous quelles conditions les prescriptions nouvelles sont appliquées aux établissements en cours d'exploitation.

18) Article 3. Le contrôle initial des prescriptions désignées à l'article 2 du présent arrêté est effectué par la commission consultative départementale de la protection civile, de la sécurité et de l'accessibilité, désignée ci-après sous le terme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sécurité” ; pour les affaires le concernant, un délégué de la commission de surveillance des bateaux de navigation intérieure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siège à la

전규정 및 1990년 1월 9일자 테크레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정비공사(travaux d'aménagement)를 준수했음을 확인했을 때, 시설물을 관할하는 데파르트망의 도지사¹⁹⁾는 화재 및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안전규정에 부합한다는 증명서(attestation)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 파리(Paris)만 예외적으로 본 증명서를 경찰청장(préfet de police)이 발부한다(제4조).²⁰⁾ 전술한 화재 및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안전규정에 관한 증명서는 권한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contrôles périodiques)를 위해 방문했을 때 유효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1등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이루어지며 나머지 2, 3, 4등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격년으로 실시된다(제6조).²¹⁾ 탑승가능한 최대인원은 시설물의 예정된 영업용도(type d'exploitation prévu de l'établissement)를 고려하여, 건설자(constructeur)와 데파르트망 안전위원회가 제출한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sécurité et participe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19) 프랑스의 도지사(prefet)는 선출직이 아닌 국가가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데파르트망(département)과 레지옹(région), 두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며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이기에 '국가의 대표자'(représentant de l'Etat)로 흔히 불린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72조 6문에서는 '정부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국가의 대표자는 프랑스공화국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익, 행정감독 및 법률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Dan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le représentant de l'État, représentant de chacun des membres du Gouvernement, a la charge des intérêts nationaux, du contrôle administratif et du respect des lois)고 정하고 있다.

20) Article 4. Lorsque 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sécurité a constaté que l'établissement respecte les règles de sécurité visées à l'article 2 du présent arrêté, ainsi que les travaux d'aménagement prescrits par le préfe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3 du décret du 9 janvier 1990 susvisé, le préfet du département dans lequel l'établissement est établi délivre une attestation de conformité aux règles de sécurité relatives à la protection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Pour Paris, cette attestation est délivrée par le préfet de police.

21) Article 6. L'attest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4 du présent arrêté doit être validée lors de visites de contrôles périodiques effectuées en cours d'exploitation par les commissions de sécurité territorialement compétentes. Ces visites interviennent chaque année pour les établissements de 1re catégorie, tous les deux ans pour les établissements de 2e, 3e et 4e catégorie.

기술적 문서(dossier technique)에 따라 권한있는 행정청이 공동으로 정한다(제7조).²²⁾

(2) 부유식건축물 타입(type EF)의 시설물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와 공포의 위험에 대한 안전규정²³⁾

[표 5]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1월 9일자 아레떼에서 정하는 부유식건축물 타입(type EF)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와 공포의 위험에 관한 안전규정 개요

제EF1조	적용범위
제EF2조	용어
제EF3조	안전규정
제EF4조	구조기구 사용 시 사용가능한 경로
제EF5조	연안으로의 출입로 계산
제EF6조	개별적 위험에 대비한 부지
제EF7조	외장재
제EF8조	비상구 특성
제EF9조	연기배출
제EF10조	난방
제EF11조	가연성가스 및 액화탄화수소 설비
제EF12조	액화탄화수소 설비
제EF13조	특수 가스 공급 및 사용
제EF14조	채광
제EF15조	소등방법
제EF16조	경보시스템
제EF17조	비상경보시스템
제EF18조	사용자 의무

22) Article 7. L'effectif maximal de personnes admissibles à bord est fixé conjointement par l'autorité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en fonction du dossier technique remis par le constructeur et par la 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sécurité, compte tenu du type d'exploitation prévu de l'établissement ; l'effectif retenu étant le plus petit des deux.

23) Etablissement du type EF : Règlement de sécurité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dans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1) 적용범위 및 안전규정(제EF1조~제EF3조)

적용범위에 관한 제EF1조에 근거하여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될 시설물과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서 실행예정인 정비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행정적 성격의 조항과 기술점검(vérifications techniques), 검사(contrôle) 및 보수(entretien)에 관한 조항은 건축된 모든 시설물에 적용 가능하다.(제EF1조)²⁴⁾ 한편, 다중이용시설 부유식 건축물에서 특수하게 쓰이는 용어(terminologi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및 공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bâtiment), ‘지층’(rez-de-chaussée), ‘지하’(sous-sol)는 각기 ‘시설물’(établissement), ‘퇴거경로’(pont d'évacuation des personnes), ‘퇴거경로의 지하부분’(parties situées au-dessous du pont d'évacuation des personnes)으로 지칭한다.(제EF2조)²⁵⁾ 안전규정에 관한 제EF3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 및 공포 위험에 대한 안전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단, 제CO1조 내지 제CO5조, 제CO13조 내지 제CO15조, 제CO20조와 제CO21조, 제CO24조, 제2절(paragraphe 2) 그리고 제CO25조 내지 제CO39조는 제외한다.(제EF3조)²⁶⁾

24) Article EF 1. Domaine d'application

§ 1. Les présentes règles de sécurité sont applicables aux établissements à construire, ainsi qu'aux aménagements ou modifications à réaliser dans les établissements existants.

§ 2. Les dispositions à caractère administratif et celles relatives aux vérifications techniques, au contrôle et à l'entretien sont applicables à tout établissement existant.

25) Article EF 2. Terminologie

Pour l'application du règlement de sécurité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dans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es termes bâtiment, rez-de-chaussée, sous-sol sont respectivement remplacés par établissement, pont d'évacuation des personnes, parties situées au-dessous du pont d'évacuation des personnes.

26) Article EF 3. Règles de sécurité

En l'absence de dispositions particulières prévues par les règles ci-après, les dispositions générales et particulières du règlement de sécurité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et de panique sont applicables, à l'exception des articles CO 1 à CO 5, CO 13 à CO 15, CO 20 et CO 21, CO 24, paragraphe 2, et des articles CO 25 et CO 39.

2) 건축과 내부정비에 관한 기술규정(제EF4조-제EF14조)

제EF4조 내지 제EF14조는 건축과 내부정비에 관한 기술규정으로 구조기구 사용 시 사용가능한 경로(voie utilisable par les engins de secours)(제EF4조), 연안으로의 출입로 계산(제EF5조), 개별적 위험에 대비한 부지(locaux à risques particulier)(제EF6조), 외장재(revêtement extérieur)(제EF7조), 비상구 특성(caractéristiques des dégagements)(제EF8조), 연기 배출(désenfumage)(제EF9조), 난방(chauffage)(제EF10조), 가연성가스 및 액화탄화수소 설비(installation aux gaz combustibles et aux hydrocarbures liquéfiés)(제EF11조), 부유식 시설물에 실린 액화탄화수소 설비(installations embarquées aux hydrocarbures liquéfiés)(제EF11조), 액화탄화수소에 실린 설비(installations embarquées aux hydrocarbures liquéfiés)(제EF12조), 특수 가스 공급 및 사용(distribution et utilisation de gaz spéciaux)(제EF13조), 채광(éclairage)(제EF14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3) 구조수단(제EF15조-제EF17조)

제EF15조 내지 제EF17조에서는 구조수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소등방법(moyens d'extinction)(제EF15조), 경보시스템(système d'alarme)(제EF16조), 비상경보시스템(système d'alerte)(제EF17조) 등을 규정한다.

4) 사업자의 의무(제EF18조)

사업자는 안전에 관한 장부를 매일 기록해야 한다.

2.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2007년 11월 30일자 도시계획, 주거, 건축일반국 각부(部)공동훈령²⁷⁾

훈령(circulaire)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각 부의 장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소속 공무원에만 구속력이 있고 행정의 상대방에는 법적효력이 없어 통상의 경우 월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데크레나 아레떼와 달리 법전(code)²⁸⁾에 수록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2007년 11월 30일자 각부(部)공동훈령은, 건축 시의 집단주거건축물과 개인가옥, 그리고 건축 또는 설립(création) 시의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에 관한 2006년도 8월 1일자 두 개의 아레떼와 2007년 9월 11일자 데크레에 의해 개정된 2006년도 5월 17일 적용 데크레²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에 개방된 시설 및 주거건축물의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평등, 시민권(citoyenneté) 및 참여에 관한 2005년 2월 11일자 법률’³⁰⁾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

27) 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n° 2007-53 DGUHC du 3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et des bâtiments d'habitation. DGUGC는 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의 약자로 도시계획, 주거, 건축국으로 설비부(Ministère français de l'Équipement)에 속한다. 동시에 주택과 지속가능한 주거부 장관(ministre chargé du Logement et de l'Habitat)에 권한 하에 존재한다.

28) 프랑스에는 현재 75개의 법전이 존재한다. 법전은 법률편(partie législative)과 명령편(partie réglementaire)으로 이루어진다.

29) Décret d'application n° 2006-555 du 17 mai 2006, modifié par le décret n° 2007-1327 du 11 septembre 2007 et des arrêtés du 1er août 2006 concernant, d'une part, les bâtiments d'habitation collectifs et des maisons individuelles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autre part, l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ou de leur création.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에 개방된 시설의 장애인 접근가능성에 관한 1994년 7월 7일자 훈령³¹⁾은 폐지되었다.

제 2 절 그 밖의 플로팅 건축 관련 규정

1.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³²⁾

데크레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을 일컫고, 아레떼는 각 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또는 규칙을 총칭한다.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는 총 다섯 개의 절(titre), 5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상선, 여객선, 부유식 기구 및 부유식 시설물에 적용되는 규정 - 항해자격, 운항증 발급절차에 관여하는 기관과 위원회 등 - 및 유람선 관련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운송법전의 명령편 일부조항에 관한 2013년 3월 25일자 데크레³³⁾에 따라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는 폐지되었고, 기존의 조항은 모두 운송법전 명령편으로 편입되었다.

30)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31) Circulaire n° 94-55 du 7 juillet 1994 relative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32) Décret n°2007-1168 du 2 août 2007 relatif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33) Décret n° 2013-251 du 25 mars 2013 relatif à certaines dispositions de la partie réglementaire du code des transports, JORF n° 0073 du 27 mars 2013, p. 5146.

2.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³⁴⁾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운항증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 제1절(titre I)은 운항증 발급절차에 개입하는 기관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감독기관(제1장) 및 점검위원회 (commission de visite)의 구성(제2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운항증의 최초발급에 관한 제2절의 제1장은 건조(建造)(mise en chantier)의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제9조에서는 운송법전 제 D4221-24조 및 제D4221-25조에 따라 24미터 이상의 화물선·여객선·유람선, 부유식 기구,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24미터 이상의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은 가동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서류에 기입하여 사전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
2. 필요한 경우 소유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건조현장의 명칭 및 주소 ;
4. 대형선박 또는 부유식 시설물의 구체적 사용소개, 특징, 예상되는 이용장소 및 조건 ;
5. 운송법전 제D4221-18조에 적시된 대형선박 또는 부유식 시설물의 건조, 설계임무를 완성하는 소유주 책임의 통제기구의 명칭 및 필요한 경우 각각의 업무 참여분담 ;
6. 건조작업 예상 착수일시 및 기간 ;
7. 대형선박 또는 부유식 시설물의 일반적 특성을 드러내는 설계도.

34) Arrêté du 21 décembre 2007 relatif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제2장은 운항허가증 발급을 위한 사전 의무점검을 정하고 있고, 제3장은 운항허가증 요청에 관한 사항이다. 제4장은 운항허가증 발급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3절은 운항증의 갱신에 대하여 운항증 갱신요청(제1장), 점검위원회 개입(제2장), 운항증의 갱신(제3장)을 규정한다.

아울러 임시운항증(제1장), 운항증 연장(제2장), 추가 유럽공동체 자격증(제4장), 운항증의 변경(제5장)에 관하여 제4절에서 정하고 있다.

제5절은 운항증의 원본, 복사본 및 사본(제1장), 선박식별의 유럽인 고유의 번호(제2장), 운항증 등록(registre)(제3장), 전자매체(support électronique)(제4장), 행정청의 정보(제5장) 등 행정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제6절은 운항안전에 관한 한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7절은 그 밖의 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3.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10년 8월 3일자 훈령³⁵⁾

2008년 1월 1일부터 하천에서 운항하는 대형선박(bâtiments fluviaux)과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 발급절차가 새로이 개시되었다. 이는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증에 관한 2007년 8월 2일자 개정 데크레와 2007년 12월 21일 개정 아레떼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아울러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상선(bateaux de marchandises), 여객선(bateaux à passagers) 및 부유식 기구(engins flottants)에 적용가능한 안전 기술방침에 관한 2008년 12월 30일자 개정 아레떼에 따라 하천에서 운항하는 대형선박에 관한 새로

35) Circulaire du 3 août 2010 relative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은 기술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이들 규정의 명확한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précisions)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본 훈령의 제정목적에 있다.

따라서 2007년 8월 2일자 데크레의 적용사항으로 항해자격, 항해자격의 연장, 감독기관,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에 관하여는 감독기관의 식별정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 리스트, 비(非)정형적 건축, 유효기간 등을, 그리고 2008년 12월 30일자 아레떼의 적용을 위하여 기술방침, 한시적 조항(dispositions transitoires)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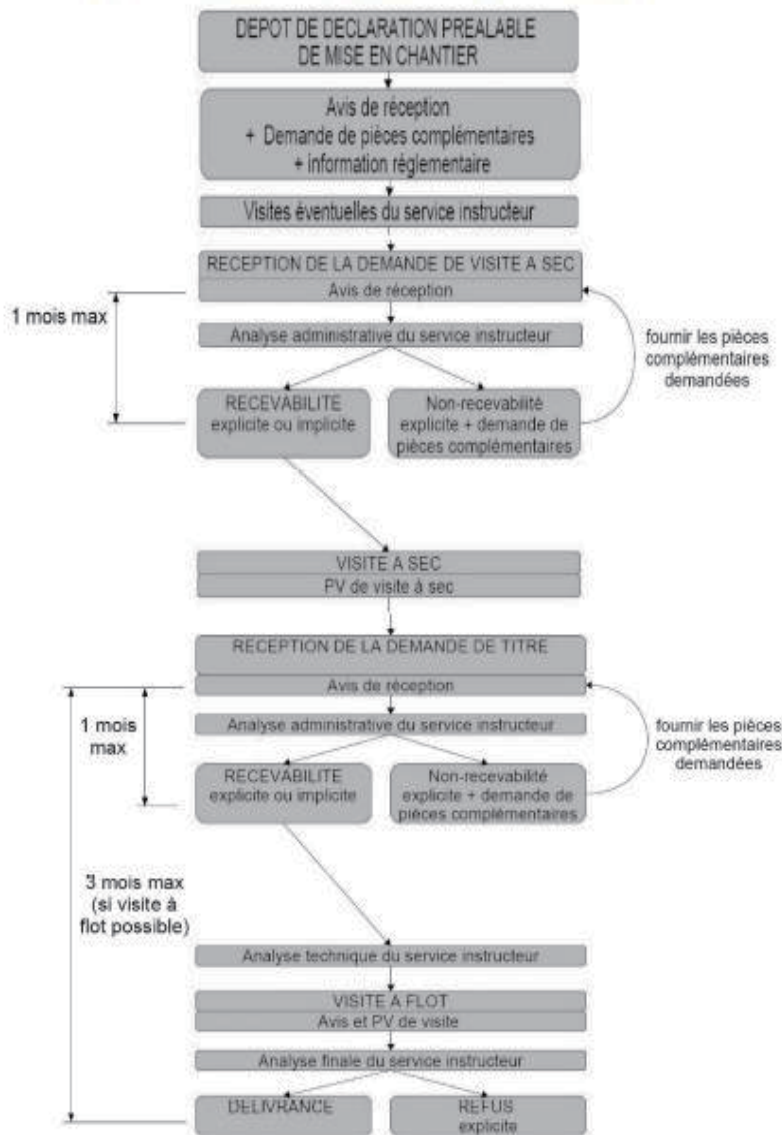
이 밖에 명백한 위험, 한시적 조항, 서비스 선박(bateaux de service), 하우스 보트(bateaux-logements), 종합도표(tableau de synthèse), 항해자격증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여섯 개의 별도 부속서(annexe)를 두고 있다.

[그림 7] 2010년 8월 3일자 훈령 부속서VI :
항해자격증 발급절차

ANNEXE VI

PROCÉDURES DE DÉLIVRANCE DES TITRES DE NAVIGATION : DIAGRAMMES DE SYNTHÈSE

DÉLIVRANCE DE TITRES DE NAVIGATION AVEC VISITE À SEC



4. 화물선, 여객선 및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부유식 기구에 적용되는 안전기술방침에 관한 2013년 9월 24일자 아레떼³⁶⁾

화물선, 여객선 및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부유식 기구에 적용되는 안전의 기술적 규정에 관한 2013년 9월 24일자 아레떼는,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상선, 여객선, 부유식 기구에 적용가능한 안전기술방침에 관한 개정 2008년 12월 30일자 부속서7 ‘기술적 특례 유럽공동체 증서 발급을 위한 2008년 12월 30일 이전에 존재하는 여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특례사항’의 제6bis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다.

36) Arrêté du 24 septembre 2013 relatif aux prescriptions techniques de sécurité applicables aux bateaux de marchandises, aux bateaux à passagers et aux engin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제 4 장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 관련 분쟁사례 및 개선방향

제 1 절 플로팅 건축허가 관련 분쟁사례

1. 사실관계

Quimper에 거주하는 다니엘 쥐팡(Daniel Juppin)은 Nantes 지류(canal) 가까이에 위치한 Saint-Thois의 수역(plan d'eau)에 목조 부유식 가옥을 짓고자 자동 정수(淨水)처리 시설이 있는 3.000m²의 연못(étang)을 매입한다(Saint-Thois시(市)는 Finistère 데파르트망(도(道))에 속한 꼬뮌이다. Finistère는 프랑스 13개 레지옹 중 하나인 브루타뉴(Bretagne)를 구성하는 4개의 데파르트망 - Côtes-d'Armor, Finistère, Ille-et-Vilaine, Morbihan - 가운데 하나이고, 브루타뉴의 도청은 Rennes에 위치한다).

2009년 2월 쥐팡이 시청에 플로팅 하우스 건축계획서를 제출할 시 시청에서는 도시계획문서(document d'urbanisme)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두 달 뒤 쥐팡은 공사에 착수하였고, 180m²의 토대를 건축하는데 든 비용은 약 400,000유로에 달한다. 그러나 2009년 10월, 합체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조례(arrêté municipal)에 따라 공사는 중지된다.

Saint-Thois시청 측은 “Saint-Thois는 건축허가권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 건축허가권은 Finistère 도지사(préfet)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Saint-Thois 시청의 허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쥐팡에 확인시켜준 것 뿐이다. 그러나 도청(préfecture)에서는 이 경우 건축허가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위한 조례를 발동(prendre un arrêté)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적으로 플로팅 하우스를 지을 수는 있으

나 하천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도시계획 규정에 합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8] 다니엘 쥐팡씨(Quaimper 거주)는 부유식 함체만 지어놓은 상태에서 2009년 이래로 공사중지 상태이다.



캠핑 트레일러(caravane)용 주차장(stationnement) 또한 불허되었다.

쥐팡은 ‘개인이 플로팅 하우스를 건축하고자 할 때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어떠한 법도 플로팅 하우스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의 부재를 주장하였다.³⁷⁾ 아울러 쥐팡은 플로팅 하우스는 건축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항해하지 않는(non-navigante) 부유식 건축물이고, 따라서 단지 하천법에 따라 규율될 뿐이라는 것이다.³⁸⁾

사실, 주거선박(bateaux-logements) 및 국유지와 사유지에 위치하는 부유식 시설물과 같은 플로팅 하우스(maison flottante)는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bâtiments) 및 운항중에 관한 2007년 12

37) <http://www.peniche.com/Justice/plateforme-EF.htm> (2016.10.12.)

38) «Elle est considérée comme construction flottante non-naviguante et, à ce titre, relève du seul droit fluvial» <http://www.peniche.com/Justice/plateforme-EF.htm> (2016.10.12.)

월 21일자 아레떼’ 제9조³⁹⁾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본 아레떼는 운송법전 전술한 부유식 시설물 중 건축허가를 받은 선례는 없다. 이러한 제약은 다른 비슷한 경우에 있어 사전적 거부(refus préalables)로 이어지기에 플로팅 하우스를 지은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손해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쥐팡은 공사중지명령을 철회(retirer)하거나 (하급법원의 판결을) 과기(infirmer)하는 것이 행정적 과오를 바로잡는(cristalliser la faute administrative)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였다.⁴⁰⁾

쥐팡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요한 논거로 제시한다.

- ◇ 2009년 3월 16일 Finistère의 도지사령(arrêté du préfet du Finistère)에서 Le Moulin de la Roche. 하천(cours d'eau)의 선취(le prélèvement)에 대해 규정함.

39)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bâtiments) 및 부유식 시설물의 운항중에 관한 2007년 12월 21일자 아레떼’는 부유식 시설물의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운송법전 제D4221-24조 및 제D4221-25조에 따라, 24미터 이상의 화물선 · 여객선 유람선, 부유식 기구,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24미터 이상의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은 가동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서류에 기입하여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1.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
2. 필요한 경우 소유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건조현장의 명칭 및 주소 ;
4. 대형선박 또는 부유식 시설물의 구체적 사용소개, 특징, 예상되는 이용장소 및 조건 ;
5. 운송법전 제D4221-18조에 적시된 대형선박 또는 부유식 시설물의 건설, 설계임을 완성하는 소유주 책임의 통제기구의 명칭 및 필요한 경우 각각의 업무 참여분담 ;
6. 건조작업 예상 착수일시 및 기간 ;
7. 대형선박 또는 부유식 시설물의 일반적 특성을 드러내는 설계도.

40) <http://www.peniche.com/Justice/plateforme-EF.htm> (2016.10.12.)

◇ 2010년 3월에 부유식 함체(플랫폼)에 대하여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DDTM, 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territoires et de la mer)이 부유식 함체에 대하여 건축허가증을 발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브루타뉴 시장 또한 부유식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음.

Rennes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은 공사중지명령(arrêté interruptif des travaux)철회를 요청하는 두 번의 급속심리(référé)를 각하하였는데, 법원이 제시한 사유는 관련 사안에 권한있는 행정청은 Saint-Thois 시장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판사는 쥐팡이 제시한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는 법적으로 도시계획법과 구분되는 영역이므로, 계획된 공사(travaux projetés)는 건축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는 2010년 3월자 오르도낭스에 따른 급속심리 판사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되돌리지 않는다⁴¹⁾’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쥐팡은 Rennes 행정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

41) «Ces deux documents ne sont pas de nature à remettre en cause l'appréciation portée par le juge des référés dans l'ordonnance du 3 mars 2010 selon laquelle les travaux projetés requièrent l'obtention d'un permis de construire». <http://www.peniche.com/Justice/plateforme-EF.htm> (2016.10.12.)

[그림 9]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에서 발부하는 부유식 시설물 건축허가증서

Certificat d'établissement flottants DDTM



Liberté • Égalité • Fraternité
REPUBLIQUE FRANÇAISE

Nantes, le 30 mars 2010

Le directeur départemental des territoires et de la mer
à
Monsieur Daniel JUPPIN
6, rue du maréchal Foch
29000 QUIMPER

**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territoires
et de la mer
de Loire-Atlantique**

**service
Transports**

**Unité Sécurité Fluviale,
Loire, VNF**

**Centre instructeur de
Sécurité Fluviale**

objet : Déclaration préalable de mise en chantier

références :

affaire suivie par : Didier ROUBENNE
tél. : 02 40 71 02 15 ; fax : 02 40 71 02 19
courriel : didier.roubenne@loire-atlantique.gouv.fr

PJ :

Monsieur JUPPIN,

Comme suite à votre transmission d'une déclaration préalable de mise en chantier d'une maison flottante, je vous informe que ce dossier est conforme au contenu prévu à l'article 9 de l'arrêté du 21 décembre 2007 relatif aux titres de navigation des bâtiments et établissements flottants naviguant ou stationnant sur les eaux intérieures.

Je vous délivre donc un avis favorable pour la mise en chantier de cet établissement flottant.

Cependant, s'il vous appartient de produire, à la fin du chantier, la déclaration écrite de conformité prévue à la division 240 qui régit la construction amateur, je vous demande de bien vouloir me transmettre la fiche technique et l'attestation de norme CE des flotteurs construits par la société Batiflo, ainsi que les certifications dont le constructeur fait état sur son site internet (calculs de résistance sur l'élément plastique, validation de la dalle par le CSTB ainsi que la validation de la flottaison et de la résistance aux courants et au vent du bureau maritime).

Par ailleurs, comme demandé dans mon courrier du 28 février 2010 vous voudrez bien produire dès que possible une étude de stabilité de l'ensemble de la construction (plateforme + habitation + équipements divers).

Je vous invite à contacter le CISF pour toute demande de renseignements complémentaires.

Je vous rappelle enfin que la délivrance d'un certificat d'établissement flottant ne vous exonère pas de l'obtention des autorisations au titre des autres réglementations en vigueur.

Veuillez agréer, monsieur, l'expression de mes sentiments distingués.



Jean BILLAUD
Chef du Service Transport

horaires d'ouverture :
9h00 - 12h00
14h00 - 16h30

adresse :
10 bd Gaston Serpette
BP 53828
44036 Nantes cedex 1
téléphone :
02 40 67 26 26
télécopie :
02 40 67 25 52
site internet :

위의 [그림 9]는 데파르트망 국토해양국에서 발부하는 부유식 시설물의 건설을 허가하는 증서이며, 본 사안에서 쥐팡씨가 루아르-아틀란틱 국토해양국으로부터 플로팅 하우스의 토대가 되는 플랫폼의 건축 허가를 발급받은 증서(certificat)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 30일

루아르-아틀란틱 국토해양국

다니엘 쥐팡 귀하.

제목 : 건설사전신고(déclaration préalable de mise en chantier)

담당자. 디디에 루벤.

쥐팡씨께,

귀하가 제출한 부유식 가옥(maison flottante)의 건설 사전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전신고서는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bâtiment) 및 부유식 시설물(établissement flottant)의 운항허가에 관한 2007년 9월 21일자 아레떼 제9조에서 규정한 내용⁴²⁾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부유식 시설물의 건설작업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시설의 건설작업 종료 시에 아마츄어 건축에 관한 240디비전에서 정하는 적합증명의 서면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추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문서, Batiflo사가 제작한 부유물체의 CE 규범준수를 증명서하는 서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한 각종 자료 등.

아울러 2010년 2월 28일자 우편에서 요청드린 바와 같이 건축제반(플랫폼, 거처, 그 밖의 시설)의 안정성 검토서를 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천안전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결요지

2010년 2월 8일, 쥐팡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Rennes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 2009년 10월 5일 Saint-Thois시장의 공사중지처분 취소
- 행정재판법전(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제L761-1조⁴³⁾에 근거하여 Saint-Thois시에 3,000유로 손해배상 청구

Rennes 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 △ 2009년 6월 25일 공사는 도시계획법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
- △ 도시계획법전 제421-1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은 토대(fondations)조차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법전 제421-1조

건축물(constructions)은 기초공사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성질과 위치에 비추어 사전건축허가 대상인 현존 건축물에 시행되는 공사 및 용도변경(changements de destination)은 최고행정법원령(décret en Conseil d'Etat)에 의하여 그 목록을 정한다.

42) ‘내수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는 대형선박 및 부유식 시설물의 항해자격에 관한 2007년 9월 21일자 아레떼’ 제9조는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24미터 이상의 사적용도의 부유식 시설물 등의 사전신고사항에 관한 조항으로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해당 시설물의 구체적 목적, 장소, 예상되는 건설공사 일시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3장, 제2절, 1참고.

43) Dans toutes les instances, le juge condamne la partie tenue aux dépens ou, à défaut, la partie perdante, à payer à l'autre partie la somme qu'il détermine, au titre des frais exposés et non compris dans les dépens. Le juge tient compte de l'équité ou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e la partie condamnée. Il peut, même d'office, pour des raisons tirées des mêmes considérations, dire qu'il n'y a pas lieu à cette condamnation.

△ 도시계획법전 제480-2조44)에 따라 ‘건축허가 없이 이루어진 건축

44) L'interruption des travaux peut être ordonnée soit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agissant à la requête du maire, du fonctionnaire compétent ou de l'une des associations visées à l'article L. 480-1, soit, même d'office, par le juge d'instruction saisi des poursuites ou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L'interruption des travaux peut être ordonn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sur saisine du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a région ou d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pour les infractions aux prescriptions établi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522-1 à L. 522-4 du code du patrimoine.

L'autorité judiciaire statue après avoir entendu le bénéficiaire des travaux ou l'avoir dûment convoqué à comparaître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La décision judiciaire est exécutoire sur minute et nonobstant toute voie de recours.

Dès qu'un procès-verbal relevant l'une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rticle L. 480-4 du présent code a été dressé, le maire peut également, si l'autorité judiciaire ne s'est pas encore prononcée, ordonner par arrêté motivé l'interruption des travaux. Copie de cet arrêté est transmise sans délai au ministère public. Pour les infractions aux prescriptions établi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522-1 à L. 522-4 du code du patrimoine,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a région ou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peut, dans les mêmes conditions, ordonner par arrêté motivé l'interruption des travaux ou des fouilles. L'autorité judiciaire peut à tout moment, d'office ou à la demande, soit du maire ou du fonctionnaire compétent, soit du bénéficiaire des travaux, se prononcer sur la mainlevée ou le maintien des mesures prises pour assurer l'interruption des travaux. En tout état de cause, l'arrêté du maire cesse d'avoir effet en cas de décision de non-lieu ou de relaxe.

Le maire est avisé de la décision judiciaire et en assure, le cas échéant, l'exécution.

Lorsque aucune poursuite n'a été engag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informe le maire qui, soit d'office, soit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met fin aux mesures par lui prises.

Le maire peut prendre toutes mesures de coercition nécessaires pour assurer l'application immédiate de la décision judiciaire ou de son arrêté, en procédant notamment à la saisie des matériaux approvisionnés ou du matériel de chantier.

La saisie et, s'il y a lieu, l'apposition des scellés sont effectuées par l'un des agents visés à l'article L. 480-1 du présent code qui dresse procès-verbal.

Les pouvoirs qui appartiennent au maire, en vertu des alinéas qui précèdent, ne font pas obstacle au droit du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de prendre, dans tous les cas où il n'y aurait pas été pourvu par le maire et après une mise en demeure adressée à celui-ci et restée sans résultat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toutes les mesures prévues aux précédents alinéas.

Dans le cas de constructions sans permis de construire ou d'aménagement sans permis d'aménager, ou de constructions ou d'aménagement poursuivis malgré une décision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suspendant le permis de construire ou le permis d'aménager, le maire prescrira par arrêté l'interruption des travaux ainsi que, le cas

에 대하여 시장은 조례로 공사중지명령을 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귀광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 결

현재 프랑스에서는 ‘부유식’ 형태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관한 근거규정은 운송법전에 따른 ‘부유식 시설물’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플로팅 하우스 건축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데파르트망의 국토해양국의 부유식 함체의 건축허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플로팅 하우스를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도시계획법전에 따른 건축허가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 시 조례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증가할 수 있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법전, 건축주거법전, 공물법전, 운송법전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규정 등과 조화로운 법적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플로팅 건축법제의 개선방향

프랑스의 건축법제는 크게 도시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과 건축주거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 의해 운용된다. 건축요건과 절차, 효과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다.

échéant, l'exécution, aux frais du constructeur, des mesures nécessaires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 copie de l'arrêté du maire est transmise sans délai au ministère public. Dans tous les cas où il n'y serait pas pourvu par le maire et après une mise en demeure adressée à celui-ci et restée sans résultat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prescrira ces mesures et l'interruption des travaux par un arrêté dont copie sera transmise sans délai au ministère public.

Dans le cas où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fait usage des pouvoirs qui lui sont reconnus par les alinéas 9 et 10 du présent article, il reçoit, au lieu et place du maire, les avis et notifications prévus aux alinéas 5 et 6.

도시계획법전은 우리나라의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것이다. 건축주거법전은 건축물의 안전 및 위생, 시공사, 주택지원, 임대주택 등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한다.

건축물의 안전, 위생, 기능 등에 관한 측면은 주거건축법전에서 다루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에 관한 측면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제도를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⁴⁵⁾ 따라서 운송법전에서 규율하는 부유식 시설물 외에 기초공사를 요하는 부유식 건축물의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법률제정 내지는 도시계획법전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한 곳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내부구조를 상업용(또는 거주용)에 맞게 개조하여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프랑스 도시계획법전 및 건축주거법전의 구성

도시계획법전	건축주거법전
제1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의 일반기준 제2부 선매권과 비축지 제3부 토지정비 제4부 건축, 정비, 철거에 적용되는 제도 제1편 도시계획확인서 제2편 다양한 허가와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제3편 건축에 고유한 규정	제1부 총칙 제1편 건축물의 건축 제2편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 제1장 방화, 자재의 분류 제2장 고층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 제3장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및 공황으로부터의 보호 제4장 전시(戰時) 건축물의 변경

45) 김현희, “프랑스와 한국의 건축허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최근의 개정동향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회 제17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 p. 292.

도시계획법전	건축주거법전
<p>제4편 정비에 고유한 규정 제5편 철거에 고유한 규정 제6편 공사의 적합성 감독 제7편 기타규정 제8편 벌칙</p> <p>제5부 조직, 영조물, 회사의 설치 제6부 도시계획소송에 관한 규정 제7부 Mayotte에 적용되는 규정</p>	<p>제5장 일정한 건축설비의 안전 제6장 주택에 대한 경찰개입 제7장 건축물의 수위 또는 경비 제8장 수영장의 안전 제9장 주거용 집합건물의 안전</p> <p>제3편 난방, 상수도, 외장, 환개미 방제 제4편 건설산업에 관한 규정 제5편 통제와 형사제재 제6편 해외 데빠르트명과 Saint-Pierre et Miquelon에 대한 특칙</p> <p>제2부 시공사의 지위 제3부 주택의 건설과 정비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제4부 저가임대주택 제5부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나 비위생적인 건축물 제6부 주택의 비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p>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주거법전에서 다중이용시설에 관련하여 안전규정을 두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 또는 정지상태의 선박 및 내수면에 정박한 선박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에 관한 1990년 아레떼에서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와 공포의 위험에 대한

안전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플로팅 건축물의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 플로팅 건축물이 가옥인지 아니면 행정적 관점에서의 선박인지의 여부
- 건축허가의 필요여부
- 플로팅 건축물이 사유지를 가로지르는 구역에 자리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
- 최대 면적치를 정할 수 있는지
-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효과
- 선박형식으로 지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인원
- 관광업자가 플로팅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선주(船主)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보험적용에 있어서의 특수성
- 에너지 자립 문제
- 데파르트망의 국토해양국(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Territoires et de la Mer, DDTM)의 승인 필요여부.

제 5 장 결 론

프랑스는 네덜란드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와 달리 기본적으로 새로운 주거형태로서의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1989년에 세계박람회 개최용으로 일찍이 인공섬이 건설된 바 있으나, 그 후 공공건축물에 부유식 기법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레저용으로 이동식 부유식 콘도 등을 이용하기도 하나 부유식 건축물에 관한 근거법이 없는 상황이다.

플로팅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므로 그 형태 및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법적지위를 달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⁴⁶⁾ 플로팅 건축물을 기능 및 형태에 따라 고정형, 선박전용형, 이동형으로 구분할 때⁴⁷⁾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물은 당초 선박으로 사용되었으나 육지 및 해상에 고정되어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선박전용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즉 프랑스에서 부유식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건축물 또는 동력이 없는 선박을 활용한 사적용도로서의 부유식 건축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프랑스 부유식 건축물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로서의 부유식 시설물의 가장 흔한 형태는 수상 레스토랑 또는 수상 레스토랑 겸 회의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선박을 용도변경하여 동력을 배제한 채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부유식 ‘건축

46) 이한석, “플로팅 건축물 관련 법제도 사례 및 개선방향”, 플로팅 빌딩의 국내외 사례를 통한 주요쟁점 분석, 제1차 워크숍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6, p.21.

47) 강영훈, 부유식 수상거주시설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8. 고정형은 당초 건축물 용도로 계획되어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기능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동형은 화물선, 여객선, 해양플랜트 등 선박으로 설계되고 선박 운항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프랑스 운송법전에서 선박과 구별되는 ‘동력이 없는 부유식 시설물’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점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는 선박법을 그리고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건축주거법전에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하위법령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다원화되어 있는 국내 실정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부유식’ 형태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운송법전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고정형 플로팅 건축물에 관해서는 법적근거가 부재하다. 다만, 판례에서는 하천상의 플로팅 하우스 건축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도시계획법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새기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래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세빛둥둥섬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프랑스에서 공공용 또는 사적용도의 플로팅 건축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이를 부동산으로 인정한다면 도시계획법전에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이 요구된다. 이때 수면, 하상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공물법전 규율에 부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권을 공시함에 있어 등기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등록제도⁴⁸⁾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나 프랑스나 플로팅 건축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48)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이한석·송화철·정대,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한국향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향해항만학회, 2008, pp.257-264.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영훈, 부유식 수상거주시설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352p.
- 김종보, 「건축행정법」, 학우, 2005, 715p.
-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3, 709p.
- 김종보, 생활 속의 건축법, 학우, 2005, 764p.
- 플로팅 빌딩의 국내외 사례를 통한 주요쟁점 분석, 제1차 워크숍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6, 47p.
- 플로팅 건축법제의 개선방안 및 사례분석, 제2차 워크숍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6, 99p.
- 김성배,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입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49호, 한국법제연구원, 2015, pp.67-103.
- 김현희, “프랑스와 한국의 건축허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최근의 개정동향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17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 pp.285-310.
- 문창호, “플로팅 주거에서 삶”, 건축 제56권 제6호, 2012, p.12.
- 박성신, “왜 플로팅 건축인가? - 출현배경과 다양한 가능성 - ” 건축 제55권 제9호, 대한건축학회, 2011, pp.20-24.
- 배대승, “프랑스의 공공건축가 제도와 공공건축 사례”, 건축 제47권 제4호, 대한건축학회, 2003, pp.26-29.

참고문헌

- 백승만, “건축의 창작성과 대중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축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 프랑스 건축제도 및 전문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11호, 대한건축학회, 2009, pp.133-140.
- 송석기, “플로팅 주거건축의 주요 건축계획 항목에 관한 연구 - 플로팅 건축 관련 기준 및 주거건축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pp.5281-5289.
- 송시강, “프랑스 건축공법의 현황과 쟁점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2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pp.275-312.
- 이승영·류수훈, “공공서비스 시설 중 (협오시설)의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한 해양 플로팅 건축 적용방안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제11권 제3호,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2009, pp.43-51.
- 이한석·송화철·정대,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pp.257-264.
- 이한석·이명권·강영훈, “플로팅 건축물 관련 국내외 법제도 사례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6권 제6호,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pp.449-458.

<국외 문헌>

Règlement de sécurité incendie commenté des ERP, Le Moniteur, 3e édition, 2013, 224p.

“Une <maison flottante> édifée sur une barge posée sur un plan d'eau est une construction - Tribunal administratif de Rennes 8 février 2013 -”, *AJDA*, 2013, p.1236.

Rémi Decout-Paolini, “Fluctuat nec mergitur : pas de <maison flottante> sans permis de construire!”, *RDI*, 2015, p.497.

<인터넷 자료>

<http://www.aquashell.fr/concept/environnement-juridique/>

<http://www.peniche.com/Justice/plateforme-EF.htm>

http://www.befm-naval.com/erp_flottant_342.htm

<http://www.driea.ile-de-france.developpement-durable.gouv.fr/qu-est-ce-qu-un-bateau-a-passagers-engin-flottant-a4177.html>

<http://www.driea.ile-de-france.developpement-durable.gouv.fr/etablissement-flottant-r1889.html>

<http://www.aquashell.fr/>

<http://www.maison-flottante.fr/>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Etablissements-recevant-du-public,13420.html>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32351>

<http://www.vienne.gouv.fr/content/download/3208/20160/file/Doc.%20d%C3%A9f.%20ERP.pdf>

[https://fr.wikipedia.org/wiki/Jacques_Rougerie_\(architecte\)](https://fr.wikipedia.org/wiki/Jacques_Rougerie_(architecte))